

# 단국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대학원 운영에 관한 규정

1988년 11월 23일 제정  
1990년 3월 29일 개정  
1990년 6월 16일 개정  
1993년 8월 27일 개정  
1995년 4월 1일 개정  
1996년 4월 18일 개정  
1999년 6월 5일 개정  
2001년 6월 9일 개정  
2003년 8월 29일 개정  
2005년 1월 3일 개정  
2008년 11월 14일 개정  
2012년 6월 9일 개정  
2018년 1월 29일 개정

토 목 환 경 공 학 과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내규는 단국대학교 창학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학원의 학칙 및 시행세칙에 따라 토목환경공학과와 합리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정리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제2조 (적용범위와 효력)** 본 내규는 일반대학원 토목환경공학과 석·박사과정 및 통합학위 과정에 적용되며,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의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발생한다.

### 2.1 적용 범위와 효력

가. 토목환경공학과 대학원생은 정규(full-time)학생과 시간제(part-time)학생으로 구성됨을 원칙으로 한다. 정규학생이란 1주일에 4일 이상을 학과에서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는 자로 한다.

나. 정규학생은 매 학기당 9학점이상을 취득할 수 있다. 단 시간제학생의 학기당 취득가능학점은 6학점이하를 원칙으로 하나 지도교수의 승인 하에 9학점까지 취득이 가능하다.

## 제2장 입학관리

**제3조 (우수학생의 유치)** 토목환경공학과 소속 교수들은 토목환경공학과 석·박사 및 통합학위과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수 학생의 모집에 적극 노력한다.

### 3.1 연계과정운영제도 (2018년 1월 개정)

가. 평균학점 3.0 이상 혹은 직전 학기 학점 3.5 이상의 학생이 지원할 수 있다.

나. 연계과정 신청은 3개 학기 이내 졸업예정자로 한다.

다. 연계과정 학생의 경우, 대학원 수업은 2개 학기 이내 졸업예정학생만 수강할 수 있다.

라. 연계과정 수료자의 연구등록은 수료 이후의 학기부터 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매학기 최장 10회까지 연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제도를 연계과정으로 수료한 경우 다음 학기

에 한하여 원하는 정규 4학기에서 단축된 1개 학기만 연구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3.2 석사/석박사 통합 과정 입학

#### 가. 지원 자격

- 1)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 한다.
- 2) 유사학과를 졸업한 자의 입학은 학과 교수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일반적인 규정 이외의 의무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

#### 나. 전공 시험 과목

전공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공업수학, 재료 및 구조역학, 수리 및 수문학, 토질 및 기초공학, 교통 및 도로공학, 위생 및 환경공학 등 6과목 중 4과목을 선택한다.

#### 다. 지도 교수 선정 (전공분야)

1학기 말 까지 선정한다.

### 3.3 박사 과정 입학

#### 가. 지원 자격

- 1) 국내외의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 한다.
- 2) 특수대학원을 수료한 자나 직장을 가진 자의 입학은 학과 교수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일반적인 규정 이외의 의무를 추가로 부가할 수 있다. 단, 추가과목의 수강에 대해서는 1.다 항의 단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나. 시험과목

전공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공필기시험의 과목명과 과목 수는 전공별 소속 교수의 합의에 따른다.

#### 다. 지도 교수 선정(전공분야)

1학기 말에 선정한다.

단, 석사과정의 전공과는 다른 전공을 선택할 경우에는 학과 교수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규정 이외의 의무를 추가로 부가할 수 있다.

라. 박사 과정과 다른 전공으로 석사 학위를 받거나 동일 전공이라도 일반 대학원을 졸업하지 아니한 학생은 일반적으로 박사과정을 수료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 학점에서 6학점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논문 제출 자격을 가진다. (2012년 개정)

### 제3장 교육과정 및 교·강사 배정

#### 제4조 (교육과정)

##### 4.1 수업일수

가. 수업일수는 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1.9.26.>

나. 총장은 천재지변,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 매 학년도 2주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 제5조 (과목개설)

##### 5.1 과목 개설

가. 직전 4학기 개설 교과목 수를 유지해야 한다. (평균 교과목 수)

나. 학과공통 교과목 운영확대 및 동일 교과목 개설은 불가하다.

- 학과 간 동일과목 개설 및 운영은 불가하다.
- 기존 전공과목 중 공동수강 가능 과목은 학과공통으로 이수영역 변경하여 운영한다.
- '학과공통' 과목 1/30이상을 반드시 개설 및 운영해야한다.

다. 전임교원 강의비율을 75%이상 유지해야한다.

- 대학원 학과 참여교수진 수업을 배정해야 하며, 시간강사 추천을 지양한다.

라. 강좌배정

- 대학원 강의는 1인 1강좌 담당이 원칙이다.
- 단, 특별한 사유에 한하여 대학원장 승인을 득한 후 1강좌 이상 담당할 수 있다.

마. 동일교과목의 2년 이내 중복 개설 불가하다.

##### 5.2. 폐강기준

가. 폐강 예정 통보 : 매 학기 개강일 기준으로, 수강신청 정정기간 내 대상 교과목의 학생들이 정정할 수 있도록 폐강 교과목에 관해 통보한다.

- 나. 폐강기준 : 1) 교내교원 담당 교과목 : 수강인원 3명 미만 일 경우 폐강된다.  
2) 시간강사 담당 교과목 : 수강인원 3명 미만 일 경우 폐강된다.

#### 제6조 (취득학점)

6.1 석사학위과정에서 취득하여야 할 학점은 33학점(연구지도학점 9학점 포함) 이상으

로 한다. 다만, 연계과정 또는 연구과정 등 특별과정을 이수하고 대학원 학위과정에 진학한 경우에는 취득하여야 할 학점을 30학점(연구지도학점 6학점 포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6.2 박사학위과정에서 취득하여야 할 학점은 45학점(연구지도학점 9학점 포함) 이상으로 한다.

6.3 통합과정에서 취득하여야 할 학점은 78학점(연구지도학점 18학점 포함) 이상을 취득할 경우 수업연한인 7학기(전공 78학점, 연구지도 18학점)에 수료할 수 있다. 단, 연계과정에서 석·박사 통합과정으로 입학한 경우, 연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을 포함하여 75학점을 취득할 경우 수업연한인 6학기(전공 60학점, 연구지도 15학점)에 수료할 수 있다.

## 제7조 (교·강사 배정)

### 7.1 교·강사 배정

가. 전임교원의 강의를 기본으로 배정한다.

나. 전임교원의 강의비율이 낮은 학과의 경우, 학과 신설 시 참여한 전임교원으로 강의를 배정한다.

다. 개설교과목의 교강사는 관련 전공분야 교강사로 배정하여야 한다.

라. 해당학기 연구년 및 직전학기 강의평가 3.0 미만 교강사는 강의배정이 불가하다.

마. 교원의 기본 책임시간 (교원준칙 제4조 ‘교원의 기본 책임시간’)

(1) 교원의 강의 기본 책임시간은 학기별 주당 9시간으로 하며, 책임시간 인정기준은 학점수로 반영한다.

(2) 책임시간은 대학 및 대학원 강의를 합산하되 대학 강의를 우선적으로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임상교원은 책임시간을 진료시간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강의시간이 1개 학기 책임시간에 미달할 때에는 반드시 다음 학기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 제4장 논문지도

### 제8조 (지도교수의 선정)

지도교수 위촉 희망자는 지도 받기를 원하는 교수와 사전에 협의하여 마감일 전에 논문 지도교수 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외부 교수를 지도교수로 희망할 경우는 학과 교수

회의의 동의를 얻어 위촉할 수 있다.

## 제5장 자격시험

### 제9조 (종합학력시험 면제기준)

종합학력시험은 모든 대학원생이 이유 불문하고 반드시 응시해야 하며, 별도의 다른 면제 기준은 없다. (2018년 1월 개정)

### 제10조 (종합학력시험 출제와 채점)

#### 10.1. 종합학력시험 신청 대상자 기준과 시행방법

##### 가. 신청 대상자 기준

- 1) 석사 과정의 경우 전공 18학점 이상 취득자, 박사 과정의 경우 전공 27학점 이상 취득자, 통합 과정의 경우 전공 45학점 이상 취득자 일 경우 종합학력시험 신청이 가능하다.

##### 나. 시행 방법 변경 (2018년 1월 개정)

- 1) 필기시험의 응시과목은 석사과정일 경우 전임교원의 과목 중 2개 과목으로 한다.
- 2) 박사과정인 경우 전공 4과목으로 한다. 단, 지도교수의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할 수 없으며, 특별한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한다. 또한 박사과정의 경우, 2018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는 반드시 전임교원의 과목만 신청이 가능하며, 이전 입학생의 경우 전임교원의 과목 이외에도 외부강사의 과목 및 타대학 교류수강 과목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 3) 종합학력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시행된다.
- 4) 필기시험의 경우 각 과목당 1명의 교수가 출제 및 채점을 주관한다.
- 5) 종합학력시험의 합격점수는 80점 이상으로 한다.
- 6) 위 내용은 2018년 3월부터 적용된다.

### 제11조 (외국어시험 과목)

#### 11.1. 시험과목 및 면제

- 가. 대학원에서 시행하는 외국어 자격시험 과목은 영어, 한국어 2개 과목만 시행한다.

1) 내국인 학생 : 영어

2) 외국인 학생 : 영어와 한국어 중 1과목 선택

※ 영어 선택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외국인 학생만 가능하다.

나) 외국어 자격시험 면제

1) 내국인 학생 : 영어 성적으로만 면제 가능하다.

2) 외국인 학생 : 한국어 성적 또는 영어 성적(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외국인 학생)으로만 면제 가능하다.

※ 한국어 성적은 TOPIK 5급 이상 일 경우 면제된다. 단, 입학 시 토픽 점수 기준이 없는 외국인 학생은 TOPIK 4급 이상 일 경우 면제된다.

## 제6장 학위과정

### 제12조 (석사학위 과정 선택)

2학기 말 학위취득 방법(학위논문, 연구논문 중 택1)을 선택하여 웹정보시스템에서 입력, 출력 후 지도교수·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8년 1월 개정)

### 제13조 (석사학위 과정의 변경)

학위취득과정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단, 사유서 첨부 후 주임교수의 승인을 득할 경우 3학기 말까지 대학원장의 승인 하에 변경가능 하다. (2018년 1월 개정)

## 제7장 석사과정 학위논문

### 가. 석사학위 취득 방법별 심사절차 (2018년 1월 개정)

절 차	학위논문	연구논문
자격기준	· 자격시험(종합학력, 외국어) 통과 · 연구윤리교육 이수	· 자격시험(종합학력, 외국어) 통과 · 연구윤리교육 이수 · 예비발표 시점에 주저자로 연구재단 등재(후보)지 1편 이상의 게재 혹은 게재 확정
연구계획서	과정이수 및 적절한 시기에 지도교수에게 작성·제출	과정이수 및 적절한 시기에 지도교수에게 작성·제출
논문작성	학위논문 작성	연구논문 작성

예비발표	교수·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반드시 시행	교수·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반드시 시행
심사신청	웹정보에 심사신청 후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확인을 받은 후 대학원에 제출. 논문심사비(100,000원) 납부	논문심사비 (60,000원)
심사위원 인원	3인 (지도교수 + 교내교수 2인)	2인 (지도교수 + 교내 전공교수)
심사	심사용 학위논문	심사용 연구논문
합격 여부 판정	심사위원 3/2 이상의 찬성	심사위원장 우선
논문제출 및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절검사결과 확인서 제출</li> <li>· 겔표지 하드카바로 제본</li> <li>· 학위논문 온라인 등재</li> <li>· 중앙도서관(국회 및 국립중앙도서관)에 5부 제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절검사결과 확인서 제출</li> <li>· 학과로 연구논문 또는 학위작품 제작 보고서(작품사진 포함 필수) 제본분과 국문 파일을 제출하며, 제본은 겔표지 하드카바 필요 없음.</li> <li>· 학과에서 3년 동안 보관 후 폐기함.</li> </ul> <p>※ 중앙도서관 제출 및 학위논문 온라인 등재 없음</p>

#### 나. 예비발표

예비발표는 학위심사자가 있는 경우, 학기 시작 후 7주에서 10주 사이에 학과 교수와 학생의 참여 하에 시행한다.

#### 다. 석사학위논문 대체 방안의 심사 (2018년 1월 개정)

- 1) 연구논문은 지도교수와 1인의 교내 전공교수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학위논문에 준하는 심사로 진행한다.
- 2) 연구논문 심사결과 총 2회 불합격 판정 시 학위논문에 준하여 '수료'로 인정한다.

#### 라. 석사학위논문 대체 석사학위자의 박사학위 진학 (2018년 1월 개정)

연구논문으로 졸업한 석사학위과정 졸업자가 박사학위로 진학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재단 등재(후보)지에 주저자로 논문 2편 이상의 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수료자의 학점취득 필요 요건 (2018년 1월 개정)

- 1) 연구논문 대체에 필요한 학점취득에 따른 등록금
  - 수료 당시 기 전공 취득학점에 따라 개인차 발생한다.

수료 당시 기 전공 취득학점	연구논문 대체에 필요한 추가 취득학점	수강신청 과목수 및 등록금
24학점	6학점	2과목(등록금 전액)
27학점	3학점	1과목(등록금 반액)
30학점 이상	추가 필요 없음	없음

- 2) 추가 등록하여 취득한 성적의 평점평균이 B등급 이상인 경우에만 학점 취득이 인정된다.

**제8장 박사과정 학위논문**

가. 제출 자격

- 1) 자격시험에 통과하고 과정 재학 중에 논문집에 1편(100%) 이상 논문을 제출하고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자로서, 학위 논문심사 신청 전까지 학위논문심사신청에 대해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단, 연구재단 등재(후보)지 1편은 100%, SCI(E) 등재지 1편은 200%로 환산한다. (2012년 개정)
- 2) 논문의 발표를 인정할 수 있는 논문집은 연구재단 등재(후보)지 또는 SCI(E) 등재지로 한다. (2008, 2012년 개정).
- 3) 연구논문의 인정환산율은 다음과 같다.
  - 단, 지도교수는 공동연구자의 인원수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 (가) 1인 연구                                 100%
  - (나) 2인 공동연구                            70%
  - (다) 3인 공동연구                            50%
  - (라) 4인 이상 공동연구                    30%

나. 심사위원 선정

심사위원은 지도교수가 추천하며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단, 지도교수가 학과교수가 아닌 경우에는 학과교수 및 지도교수의 협의 하에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다. 공개 발표회

논문심사 신청 이전 학기에 학과내의 예비발표회를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08 년 개정)

라. 판 정

심사위원 4/5 이상의 찬성에 의해 합격으로 판정한다.

## 제9장 학과 운영위원회

### 제14조 (의사결정 방식)

학과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의사결정은 학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전체교수 1/2이상의 참석(위임 포함)과 참석 교수의 2/3의 찬성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10장 부 칙

- 1)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원 규정에 따르며  
기타 사항은 학과 교수회의의 결정에 따른다.
- 2) 본 규정은 1989년 1학기부터 시행한다.
- 3) 본 개정규정은 1990년 1학기부터 시행한다.
- 4) 본 개정규정은 1990년 2학기부터 시행한다.
- 5) 본 개정규정은 1994년 1학기부터 시행한다.
- 6) 본 개정규정은 1995년 1학기부터 시행한다.
- 7) 본 개정규정은 1996년 2학기부터 시행한다.
- 8) 본 개정규정은 1999년 2학기부터 시행한다.
- 9) 본 개정규정은 2001년 2학기부터 시행한다.
- 10) 본 개정규정은 2003년 2학기부터 시행한다.
- 11) 본 개정규정은 2005년 1학기부터 시행한다.
- 12) 본 개정규정은 2009년 1학기부터 시행한다.
- 13) 본 개정규정은 2012년 2학기부터 시행한다.
- 14) 본 개정규정은 2018년 1학기부터 시행한다.

## 제11장 기타 (시행세칙)

1996년 4월 18일 제정

1999년 11월 6일 개정

2003년 8월 29일 개정

1. 99년 대학원 시행세칙의 개정에 따라 1999학년도부터 박사과정에 입학한 자 중 특수대학원을 졸업한 자에 대하여는 대학원규정에 따른다. 다만, 특수 대학원 과정 중에 이수한 과목들의 인정여부는 소속 전공교수 중심으로 3인 이상을 심사위원으로 대학원주임이 위촉하며, 이수과목의 인정여부는 이들 심사위원의 결정에 따른다.
2. 대학원 실험실습비는 다음과 같이 전공별로 배분한다.
  - 1) 학과에 공통으로 필요한 기자재가 있는 경우 우선 구입할 수 있다.
  - 2) 공통비용을 제외한 대학원 실험실습비 중 총액의 50%를 먼저 5개의 전공에 균등분배하고 나머지 50%를 해당 년 1, 2 학기 등록 재학생수를 기준으로 전공별로 분배한다.